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의약 분야 수출전략 강화를 위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4급 1명, 7급 1명)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3(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)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
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
와 같다.

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9의2]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 관련)

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

총계	10
일반직 계	10
과학기술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1
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3
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	6

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(존속기한: 2025년 9월 30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	1
행정주사보 · 식품위생주사보 · 약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3조의3(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)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연구원 또는 공업연구원으로 보한다.</u> <u>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.</u>